

제 목 **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(사회복귀준비금) 안내**

병무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(매칭지원금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꼭 읽어보시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세요!

- * 매칭비율 : ('22년) 원리금의 33%, ('23년) 원리금의 71%, ('24년) 입금액의 100%
- *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'24년 입금액은 100% 매칭 지원 ('24년 월 40만원 적금 입금 시 사회복귀준비금 40만원 지원)

- ※ 장병내일준비적금 :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, 국방부, 법무부, 은행연합회,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
 - 가입대상 : 사회복무요원(병무청) / 현역병, 상근예비역(국방부) / 대체복무요원(법무부)
 - * ('24. 6. 3. 오전 9시부터)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자 가입 가능
 - 가입한도 :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,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
 - * 적금 가입시에만 혜택 지원,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 가입 필요(한도변경 가능)
 - *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
 - * 14개 은행 :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우체국

◆ 지원대상 :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

- (병무청 지원) 사회복무요원
- (국방부 지원) 현역병, 상근예비역, 대체복무요원
 - *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 가입 가능
 - '24. 6. 3. 오전 9시(은행영업일 이후)부터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
 - (예시) 잔여 복무기간 1개월 : '24. 6. 3. ~ '24. 7. 3.
 - *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(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)는 적금 가입 제한
 - *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·면·동으로 문의

◆ 지원내용(혜택) : 적금 만기해지 시 지원

① 사회복귀준비금(매칭지원금)

: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
* 매칭비율 : ('22년) 원리금의 33%, ('23년) 원리금의 71%, ('24년) 입금액의 100%

② 은행이자 5% 내외(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)

* 1% 추가 이자지원금 : '23. 12. 31.까지 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

③ 이자소득 비과세

◆ 적금 가입 방법 :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

- (PC) 사회복지포털 → 복무지원 →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→ 담당자 승인 → 가입
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

- (e-병무지갑 앱) e-병무지갑 → 우대·편의서비스 →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
신청 → 담당자 승인 →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(사회복지포털 접속) 후 은행 제출

*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, 확대 추진 중

- (병무청 앱) 병무청 앱 → 나의 병역정보 → 사회복지포털 → 장병내일준비적금
자격확인서 신청 → 담당자 승인 →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(사회복지포털 접속)
후 은행 제출

◆ 지원시기 : 소집해제(적금 만기해지 시)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

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사회복지준비금 지급

-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(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)

(예) 3월에 만기해지 : 4월 25일에 지원금 지급

- 은행에 서류(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)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

-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

*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입출금 계좌로 입금

* 지급기관 : (병무청) 사회복지무요원, (국방부) 현역병, 상근예비역, 대체복무요원

◆ 유의사항

- 조기 소집해제자 : 적금 만기해지 후 은행에서 추가 서류(만기해지 영수증,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)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시에 지원금 지급
 - *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 후 해지할 경우(만기해지)에 사회복지준비금 지급 가능
 - *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, 지원금은 '22. 1월~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도별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지급
(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)

-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,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: 복무완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에 지원금 지급
 - *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, 복무완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